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5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학영의원안)	2

I. 개요

1.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4.
- (3) 회 부 일 : 2025. 6.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학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 36 신설)</u> ○ 공제대상: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연도 지출비용에 대해 매년 각각 공제 ○ 공제율: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30.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학영의원안 2025. 6. 4. 발의(의안번호 10658)

□ 개정안은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2030년 말까지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해예방시설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함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 예방시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²⁾

이러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이 포함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산업재해와 원재료·가스·증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³⁾

그런데 이와 같이 기업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재해율은 0.48%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하였으나, 재해자수는 10만 5,1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581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5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명 증가하였음.

[2024년 1월~9월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24년 1~9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48	0.49	-0.01	-2.0
- 사고재해율	0.39	0.40	-0.01	-2.5
- 질병발생률	0.09	0.08	0.01	12.5
○ 사망만인율(‰)	0.72	0.72	0.00	0.0
- 사고사망만인율	0.28	0.28	0.00	0.0
- 질병사망만인율	0.43	0.43	0.00	0.0
○ 재해자수(명)	105,119	101,538	3,581	3.5
- 사고재해자수	85,705	84,199	1,506	1.8
- 질병재해자수	19,414	17,339	2,075	12.0
○ 사망자수(명)	1,567	1,494	73	4.9
- 사고사망자수	617	590	27	4.6
- 질병사망자수	950	904	46	5.1
○ 근로자수(명)	21,898,212	20,886,408	1,011,804	4.8

주)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4. 9월말 산업재해현황'

한편, 연도별 재해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 재해율은 2019년 대비 0.8%p 증가하였음.

[재해율 및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해율	0.58	0.57	0.63	0.65	0.66
사망자 수	2,020	2,062	2,080	2,223	2,016
업무상 질병자수	15,195	15,996	20,435	23,134	23,331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으로 답한 비율이 11.3%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제일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억)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다음으로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가 제시된 바 있음.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의무 준수 및 시설 투자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전설비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⁴⁾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처벌 등 강화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개선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이 증가한 기업이 63%이고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한 기업이 72%에 달함.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질적 유인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설비 및 작업환

4)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투자 현황, 정부 중대재해 예방정책 평가 및 중처법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6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

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저리에 지원해주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셋째, 현행법상 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투자금액에 대하여 대기업 1%, 중견기업 5%⁶⁾,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문 의 처
02)6788-5154

6)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까지는 7.5%